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123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청구)]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0. 6. 2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10,681,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81,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264590호로 양수금청구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1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746,853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배우자인 D가 2020. 6. 26. 사망하였고, C와 자녀인 피고 및 E은 망 D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 2020. 8.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C는 2020. 11. 1.경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 D의 사망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소외 F을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G(합병전 H은행)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7,500,000원으로 한, ② 망 D를 채무자,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한, ③ 망 D를 채무자,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한, ④ 망 D를 채무자,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2020. 9. 14.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07,8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망 C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3/7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망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망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채무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망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그 채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망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망 D의 상속인들이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이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가.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었던 위 ① 내지 ④ 각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후에 주식회사 I이 새로이 근저당권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은 위 판결에 따른 채권액의 범위 내인 2,746,853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20. 10. 16.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934,567원의 합계인 10,681,420원이다.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의 시가는 147,857,142원(345,000,000원×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후 말소된 위 ① 내지 ④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67,500,000원(=7,500,000원 + 36,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중 망 C가 부담하는 부분은 28,928,571원(67,500,000원×3/7)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C가 가질 수 있었던 상속분은 결국 118,928,571원(147,857,142원-28,928,571원)이다.

3) 따라서 망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10,681,420원과 망 C의 상속가액 118,928,571원 중 적은 금원인 10,681,4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81,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67500㎡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67500분의 47.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관할, 소유)